

■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09.11.26>

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(제10조 관련)

$$\text{세금} = [(\text{환급금 총액} - \text{적중단위마권 발매총액}) \times \text{환급금에 대한 과세율}] \times \frac{1}{\text{적중단위마권 수}}$$